

의안번호	2211919
의 퇴 인	김동아의원
회 답 일	2025.11.7.
추 계 번호	25D4155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특수임무공로자에게 특수임무명예수당을 참전명예수당 수준으로 지급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636억 3,100만원(연평균 127억 2,6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특수임무명예수당	7,672	8,116	8,575	9,061	9,582	63,631	12,72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제6조의2 (보상) 신설	제6조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로 결정된 사람 중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람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고 해당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함(제1항) 제6조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로 결정된 사람 중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람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고 해당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함(제2항)	의무규정
2	안 제75조의4제1항 (특수임무명예수당) 신설	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에게는 특수임무 수행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특수임무명예수당을 지급함. 다만, 다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 다른 보훈급여금과 특수임무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제6조의2 (보상) 신설	×	특수임무사망자 및 부상자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전몰·순직·전상·공상군경 또는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해사망·재해부상군경의 요건을 충족하여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대상으로 등록되어 현재 보상을 받고 있어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하지 않음
2	안 제75조의4제1항 (특수임무명예수당) 신설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에게 특수임무명예수당을 지급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 발생
 - 특수임무유공자는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, 특수임무부상자, 특수임무공로자¹⁾로 구분됨
 -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, 특수임무부상자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전몰·순직·전상·공상군경 또는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해사망·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되어 현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고 있어 추계대상에서 제외함
 - 보상금,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등 다른 보훈급여금이 참전명예수당보다 많기 때문에, 이미 다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고 있는 특수임무공로자는 기존에 받던 보훈급여금을 그대로 받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대상에서 제외함
- 개정안에 따라 지급될 특수임무명예수당의 월지급액은 참전명예수당 월지급액과 동일하다고 가정함

1) 특수임무공로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사망 또는 행방불명, 부상 등을 당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함
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,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특수임무명예수당 지급(안 제75조의4제1항 신설)

- 2024년 기준 특수임무공로자 수는 1,289명이며, 최근 5년간 연평균 1.3% 감소하였음

[표 2] 특수임무공로자 수 현황

(단위: 명)

구분	2020	2021	2022	2023	2024	연평균증가율
인원	1,357	1,346	1,322	1,307	1,289	-1.3

주: 보상금,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등 다른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함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2024년 기준 특수임무공로자 수에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을 적용하여 추정한 추계기간의 특수임무공로자 수는 아래 표와 같음

[표 3] 특수임무공로자 수 추정: 2027~2031년

(단위: 명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연평균증가율
인원	1,239	1,223	1,207	1,191	1,176	-1.3

주: 보상금,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등 다른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함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특수임무명예수당 지급단가는 참전명예수당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며, 최근 5년간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단가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

[표 4]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단가 현황

(단위: 천원, %)

구분	2020	2021	2022	2023	2024	2025	연평균증가율
월 지급단가	320	340	350	390	420	450	7.1

자료: 국가보훈부

- 최근 참전명예수당 지급단가 연평균증가율 7.1%를 적용하여, 현행법 적용 시 추계기간의 참전명예수당 지급단가를 추정하면 아래 표와 같음

[표 5]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 추정: 2027~2031년

(단위: 천원, %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연평균증가율
월 지급액	516	552	591	633	678	7.1

자료: 국가보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지급대상자와 월 지급단가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정한 추가재정소요는 아래 표와 같음

[표 6] 개정안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추가 지급단가: 2027~2031년

	2027	2028	2029	2030	2031
지급대상(명)	1,239	1,223	1,207	1,191	1,176
월 지급단가(천원)	516	553	592	634	679
추가재정소요(백만원)	7,672	8,116	8,575	9,061	9,582

주: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특수임무공로자에게 특수임무명예수당을 참전명예수당 수준으로 지급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636억 3,100만원(연평균 127억 2,6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7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특수임무명예수당	7,672	8,116	8,575	9,061	9,582	63,631	12,72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특수임무공로자에게 지급되는 특수임무명예수당 수준을 참전명예수당과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산정한 결과로, 실제 추가재정소요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